

第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臨時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日 時 1991年7月24日(水) 午後 2時37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會期決定의件
2.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鍾路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會期決定의件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改正條例案 2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面
4. 서울特別市鍾路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7面

(午後 2時37分 開議)

○議長 李斗鶴 議員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鍾路區議會 오늘 현재 이 자리에는 在籍議員 22名 中 出席議員 22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規則 第11條의 規定에 따라 開議를 宣布합니다.

다음은 事務局長으로 하여금 報告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朴大洙 議員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第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는 지난 1991年 7月 12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共用地에 編入된 私權制限土地에대한 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 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이 提出되었으며, 1991년 7月 8日字로 서울特別市議會 議長으로부터 地方教育自治에 관한 法 施行令 第3條의 規定에 따라 候補者 2名을 推薦하라는 通報가 있었으며 1991年 7月 11日 朴勤先議員 外 4人으로부터 서울特別市 教育委員 候補者 推薦方法案이 發議되었고, 鍾路區 保健所長으

로부터 서울特別市 鍾路區 保健所 酬價條例 中 改正條例案이 發議되었으며 1991年 7月 13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臨時會 集會要求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規定에 따라 集會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이미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會期決定의件

(14時40分)

○議長 李斗鶴 그러면 鍾路區議會 會議規則 第13條의 規定에 따라 議事日程 第1項 第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금번 會期는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共用地에 編入된 私權制限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 教育委員 候補者 推薦方法 및 候補選出案과 서울特別市 鍾路區 保健所 酬價條例 中 改正條例案 등 5件으로 會期는 2日間으

로 하고자 하는데 異義 없으십니까?

異議가 없으면 會期決定의 件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

(14時43分)

○議長 李斗鶴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이 案의 提案說明은 會議規則 第24條의 規定에 의거 특별히 鍾路區 庚來鳳 副區廳長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니 알아 주시기 바라고 庚來鳳 副區廳長님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庚來鳳 尊敬하옵는 李斗鶴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上程된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改正條例案의 再議 要求에 대한 說明에 앞서서 우리 區政 發展을 위하여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議員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이 條例案 上程時에는 저희 市民奉仕室長이 이 자리에 나와서 提案說明을 했습니다마는 基本 趣旨를 제대로 說明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戶籍 事務는 法院 事務인데 戶籍法과 同法 施行令 規則에서 戶籍에 따른 각종 申告事項 懈怠時 이에 관한 過怠料의 賦課徵收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에 委任 處理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각종 指導 監督은 法院에서 하고 있는 業務입니다. 따라서 오늘 現行 條例의 改正條例案을 提出하게 된 理由도 지난 6月 22日 臨時會에서 저희 市民奉仕室長이 자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戶籍過怠料 賦課徵收의 根據法인 戶籍法과 施行規則이 1990年 12月 31日 法律 第4298號로 改正 公布가 됨에 따라 戶籍過怠料 賦課徵收를 위한 구체적인 施行條例案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改正 戶籍法에 의하면 戶籍法 第130條 戶籍申告 不履行者에 대한 過怠料 上限

額을 戶籍法 改正 前에는 件當 2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引上하려는 것이고, 同法 第131條 戶籍 變動事項을 申告할 것을 催告받고도 申告義務를 不履行한 者, 또는 그에 해당하는 者는 과거 종전에 4만원의 過怠料를 물게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각각 引上 調整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戶籍法에 정한 각종 申告義務를 履行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市·區·邑·面長이 戶籍過怠料를 賦課徵收토록 되어 있으나 戶籍法과 同法 施行規則의 범위 안에서 賦課에 따른 細部 基準을 각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해서 課徵토록 委任되어 있어 이번에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戶籍法에는 過怠料의 上限額을 過怠料 賦課徵收時에 고려해야 될 일반적인 事項으로서 첫째는 懈怠 期間이나 懈怠 地域, 懈怠 事由, 申告義務者의 學歷, 申告義務者의 생활정도 등 5개항을 참작을 해서 過怠料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細部 基準은 地方自治團體에 條例로서 정하도록 委任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항에 대한 細部 賦課 基準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現行 條例에도 이와 같은 細部 基準이 정해져 施行되고 있습니다마는 戶籍法과 同法 施行規則이 改正됨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區條例도 改定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條例는 어떤 특정 地方自治團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衡平性있게 하기 위해서 大法院이 통일적인 條例案을 마련해서 전국 市·道·郡·區에 示達되었기 때문에 우리 區에서도 이에 따라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을 提出하게 되었던 것인데 지난번 會議에서 否決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再議를 要求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議員님들께서 충분히 海諒하여 주시고 原案대로 通過시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本 條例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議員님들께 이미 나누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
 條例改正條例(안)>**

제출년월일:1991. 7.

제 출 자:종로구청장

1991年 1月 1日부로 상위법인 호적법
 第130조 및 第131條의 改定으로 호적과태
 료의 금액이 인상 변경됨에 따라 호적법
 第132條의 2 및 호적법 시행 규칙 제52
 條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내용에 따라
 우리 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별
 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提案理由

2. 主要骨子

關 聯 法 規	過 怠 料 金 額	
	變 更 前	變 更 後
호적법 제130조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해태인 경우)	최고 2만원 이하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만원이하
호적법 제131조 경우 (시, 읍, 면장이 최고한 경우)	최고 4만원 이하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하

3. 改正根據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4. 개정 조례(안):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
 條例改正條例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 條
 例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서울特別市鍾路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

第1條(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法”
 이라 한다) 第132條의 2 및 戶籍法 施
 行規則(이하“規則”이라 한다) 제52조의 규
 정에 의하여 戶籍申告 또는 申請의 해태
 에 대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規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납부의무자) 過怠料 納付義務者는 신
 고 또는 신청(이하 “申告”라 한다)義務者
 또는 申告者로 한다.

第3條(賦課對象) 過怠料 賦課對象은 別表1
 과 같다.

第4條(賦課基準 및 免除) ① 區廳長은 過
 怠料의 金額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區廳長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를
 賦課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生活保護法 第3條 第1項의 규정에 의
 한 生活保護 對象者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
 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區廳長이 過怠料를 免除할 특별
 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한 자.

第5條(賦課 등) ① 區廳長은 신고를 해태
 한 자로부터 申告를 接受하는 때에는 별
 지 第1號 書式의 해태이유서를 申告書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提出을 거부할 때에는 그
 事由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 區廳長은 過怠料를 賦課하는 때에는
 납기 개시 5일 전에 별지 第2號 書式의
 納付通知書와 規則 第39號 書式의 過怠料
 納付通知를 納付義務者에게 發付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
 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區廳長은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第3號 書式의 過怠料
 決定資料簿와 規則 第51號 書式의 過怠料
 徵收簿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區廳長은 過怠料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取消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第4號 書式의 過怠料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第6條(사전징수) 區廳長은 第5條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提出과 동시에 過怠料를 自進 納付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

第7條(납부독촉) 區廳長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法 第132條의 2 第2項 및 규칙 第52條 第7項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第5條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第5號 書式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第8條(滯納處分) 區廳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納付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納付期限까지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 第132條의 2 第4항의 規定에 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第9條(準用規定) 過怠料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第10條(施行細則)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의 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條例는 1991年 8月 1일부터 施行한다.

【별표 1】

過怠料賦課對象(第3條 關聯)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법 제130조 해당인 경우	법 제131조 해당인 경우
1. 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법 제49조 법 제51조	5만원	10만원
2. 기아를 찾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적정정신청)	법 제58조	5만원	10만원
3.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3조	5만원	10만원
4. 유언집행자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4조	5만원	10만원
5. 사산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5조	5만원	10만원
6.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신고)	법 제71조	5만원	10만원
7.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법 제75조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	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
8.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법 제76조 의2	5만원	10만원
9.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취소신고)	법 제78조	5만원	10만원
10.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법 제81조	5만원	10만원
11.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82조 제1항	5만원	10만원
12.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지정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지정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82조 제2항	5만원	10만원
13.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신고)	법 제83조	5만원	10만원
14. 후임자 취임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인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경질신고)	법 제84조	5만원	10만원
15. 후견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후견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종료신고)	법 제86조	5만원	10만원
16. 사망의 사실을 안 날(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법 제87조	5만원	10만원
17.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본적 불명자, 인식 불능자의 사망)	법 제93조	5만원	10만원
18. 재판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 신고)	법 제95조	5만원	10만원
19. 호주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5만원	10만원
20. 호주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 승계신고)	법 제96조 제3항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법 제130조 해당 의 경우	법 제131조 해당 의 경우
21.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호주승계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회복신고)	법 제100조	5만원	10만원
22.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일가창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일가창립의 신고)	법 제106조	5만원	10만원
23.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부터 1월 이내에 귀화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귀화신고)	법 제109조	5만원	10만원
24.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법 제110조	5만원	10만원
25.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회복 신고)	법 제112조	5만원	10만원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법 제113조	5만원	10만원
27.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취적신고)	법 제116조	5만원	10만원
28.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취적신고)	법 제119조	5만원	10만원
29. 호적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호적정정신청)	법 제122조	5만원	10만원
30.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	법 제123조	5만원	10만원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4조 제1항 관련)

부 과 기 준		부 과 율	부 과 금 액	
구 분	세 부 기 준		법 제130조 해당	법 제131조 해당
계		100분의 100	50,000원	100,000원
해 태 기 간	비 중	100분의 40	20,000원	40,000원
	• 1월미만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1월이상 3월미만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3월이상 6월미만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6월이상 12월미만	100분의 40	20,000원	40,000원
해 태 지 역	비 중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군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시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구(특별시, 직할시)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해 태 사 유	비 중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무 지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과 실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신 고 의 무 자 의 학 력	비 중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 국졸이하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중·고졸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전문대졸이상	100분의 20	10,000원	20,000원
신 고 의 무 자 의 생 활 정 도	비 중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 비과세대상	100분의 5	2,500원	5,000원
	• 과세대상	100분의 10	5,000원	10,000원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시는 50,000원 법 제131조 해당시는 100,0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심의 자료>

제출년월일 : 1991.7.1
제 출 자 : 시민봉사실

호적 사무

호적 사무는 국가기관인 법원의 위임 사무
로서 본적지를 관할하는 사, 구, 읍, 면장
이 관장

종로구 호적현황

1. 법정동 87개동(행정동 21개동)
호적인구 : 276,179가구 1,377,408명
(평균 4.9)
제적인구 : 338,536가구 1,692,680명
(평균 5)
주민등록 인구수 : 74,481세대 236,533명
(1세대당 3.2명)
2. 호적부 책 현황 : 총 6,839권
호적부 : 2,992권

제적부 : 3,847권

과태료의 내용

1. 과태료의 성격 :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등을 해태한 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로서 보편성의 시민 부담이 아니고 특정한 질서위반자에 대한 부담부과임.
2. 호적과태료는 징수대상이 출생, 사망 등 이미 발생한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호적부 정리사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적법 제130조(신고의무자가 해태한 경우) : 최고금액 2만원 이하에서 최고금액 5만원 이하 부과
 - 호적법 제131조(호적 관청이 최고한 경우) : 최고금액 4만원 이하에서 최고금액 10만원 이하 부과

인상결정 배경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 시행('91.1.1)되고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한 금액이 인상되어 우리 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호적관태료 금액은 1984. 7. 30 정해진 것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음.

추진경위

1. '91. 1. 1 호적법(제132조의 2, 제130조,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2조)의 개정
2. '91. 4. 16 서울특별시로부터 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 준칙 시달
3. '91. 5. 1—'91. 5. 21(20일간) : 동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종로구보 게재:제56호) 이의 사항 없음.
4. '91. 6. 3 동 개정조례(안) 확정
5. '91. 6. 3 종로구의회 동 개정조례(안) 제출
6. '91. 6. 22 동 개정조례(안) 상정

실제 부과 징수상황 검토 분석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연 도	건 수(금 액)		총신고건수대 부과비율	징 수 현 황
1990년	부과 건수	1,886건 29,900천원 ○월평균:158건(1일 6건)	5.3% (1건 평균 금액:16, 000원)	○85-89(5년간):미징수 · 총:2,564건 38,690,000원 ○90년도 총 1,886건 29,900,000원 · 징수 1,805건 28,671,000원 · 미징수 81건 1,220,000원 · 미징수율:4.2%
	접수 건수	35,664건 ○월평균:2,972건(1일119건)		
1991년 1월~5월	부과 건수	971건17,487천원 ○월평균:194건(1일7건)	6.4% (1건 평균 금액:18, 000원)	○총:971건 17,487,000원 ○징수:919건16,662,000원 ○미징수:52건825,000원 ○미징수율:4.7%
	접수 건수	15,214건 ○월평균:3,043건(1일122건)		

(1991. 5. 31 현재)

○거주지별 부과징수 현황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접 수			과 태 료 부 과						비고
	계	본적 거주지 종로	거주지 타 시 도 구	계		본적 거주지 종로		거주지 타 시 도 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도별										
계	50,878 (100%)	4,729 (9.3%)	46,149 (90.7%)	2,857 (5.6%)	47,387	283 (0.55%)	4,623	2,574 (5.05%)	42,764	
'90	35,664 (100%)	3,269 (9.2%)	32,395 (90.8%)	1,886 (5.2%)	29,900	194 (0.5%)	3,049	1,692 (4.7%)	26,851	
'91 (1—5월)	15,214 (100%)	1,460 (9.6%)	13,754 (90.4%)	971 (6.4%)	17,487	89 (0.6%)	1,574	882 (5.8%)	15,913	

○본적 및 거주지 종로와 본적 종로 타 시 도 접수 비율=9.3%:90.7%

○본적 및 거주지 종로와 본적 종로 거주지 타 시 도 부과 비율=9.9%:90.1%

○부과대상자 중에서 본적 및 주소지가 종로인 경우는 총 접수 50,878건의 0.55%인 283건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과태료산정기준

원 행			개 태 구 분			정(인)	
해태기간	해 태 구 분	부과비율	해태기간	해 태 구 분	부과비율	부과비율	부과비율
신고해태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자 : 2만원 법 제131조 해당자 : 4만원	100%	신고해태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자 : 5만원 법 제131조 해당자 : 10만원	1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	100%	제	제	1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고해태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40%) 10% 20% 40%	신고해태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40%) 5 10 20 4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태지역(신고의무자 주민등록지 기준)	(20%) 5% 10% 20%		해태지역(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고의무자의 학력	국졸 이하 중·고졸 이하 초대졸 이하	(20%) 5 10 20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학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태사유	(10%) 5 10		해태사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무 지 과 실	(10%) 5 1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과세 대상 과세대상	(10%) 5 1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

호적법

제7장 罰 則

제130조(過怠料) 신고의 義務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한하여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改正 75.12.31, 84.7.30, 90.12.31>

제131조(過怠料) 市, 邑, 面의 長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催告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改正 75.12.31, 84.7.30, 90.12.31>

제132조(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市, 邑, 面의 長은 1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改正 75.12.31 84.7.30 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受理하지 아니한 때
2. 戶籍의 기재를 하는 것을 懈怠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簿, 除籍簿 또는 신고서 기타 受理한 서류의 閱覽을 거부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戶籍 또는 除去된 戶籍의 謄本, 抄本 또는 제47조의 증명서를 交付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戶籍事件에 관하여 職務를 懈怠한 때

②제1항의 過怠料處分으로 인하여 刑事責任을 免하는 것은 아니다.

第132條의 2(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130條 및 第13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邑·面의 長(第25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出生·死亡의 申告를 받은 洞의 管轄 市長·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이를 賦課·徵收한다.<改正 90.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당해 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邑·面의 長으로부터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邑·面의 長은 지체없이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의 住所 또는 居所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家庭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時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84.7.30]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0호 서식의 실기사건 보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 보고서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시·읍·면의 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議長 李斗鶴 副區廳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會議規則 第24條의 規定에 의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質疑하실 議員님 없으면 質疑를 終結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會議規則 第36條의 規定에 의거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議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千相旭議員 發言臺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發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時間關係上 討論에 있어서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이상 重疊되지 않는 討論의 發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議員님들께서 發言申請을 안하시기 때문에 不肖 千相旭이 發言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尊敬하는 議員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提出된 이 戶籍過怠料 關係資料를 보니까 지난번 6月 22日날 提出된 案件은 저희들이 볼 때 理解하기가 難解했고 不誠實하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 過怠料 引上에 대한 意味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反對를 했습니다마는 議員님들이 많이 反對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資料를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統計資料도, 過怠料에 대한 전반적인 徵收에 대한 統計資料도 나와 있고 그에 附隨되는 戶籍法이 카피가 되어서 이렇게 添附가 되어 있고 상당히 細部的

으로 資料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檢討해 보니까 이 戶籍法 過怠料는 우리 住民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輕微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住民들의 教育水準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時間的인 혹시 해외여행이라거나 장거리여행에 있어서 깜빡해서 申告를 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 戶籍法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提案說明書를 저희들이 檢討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의있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發言을 얻었습니다.

저희 議員들이 하셔야 할 役割 중에서 저희들은 모든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熟考하고 說明하고 또 住民便宜主義와 行政原理主義에 입각해서 住民과 行政의 불편한 점을 서로 解決하는 그러한 役割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本 案件에 대해서 저 千相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可決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를 정식으로 提出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예. 朴勤先議員 나오셔서 發言하십시오.

○朴勤先議員 千相旭議員에 대한 동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동의에 再請합니다.

○議長 李斗鶴 再請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의 討論하실 議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討論하실 議員이 없다고 판단하고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會議規則 第37條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表決을 할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方法은 規則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起立表決로 할까 하는데 여러 議員님들 異義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贊成하시는 議員님들께서는 起立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時55分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가 22名 在籍議員 中 22名 全員

이 贊成하였으므로 反對가 한 표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서울特別市 鍾路區 戶籍過怠料 賦課徵收條例 改正條例案이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58分)

○議長 李斗鶴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區廳의 總務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總務局長 周和鍾입니다.

尊敬하는 李斗鶴 議長님과 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을 議會에 上程하여 提案說明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30年만에 부활된 地方自治制 實施로 우리 區도 지난 4月 15日자로 이 곳에서 開院하여 議事堂이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區廳과의 和合된 분위기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議會의 事務機構도 改編을 거듭했고 人員도 補充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區議會 議事進行上 중요한 役割을 할 두 사람의 專門委員 任用資格에 관한 規定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月 초 上級機關인 서울特別市로부터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 改正條例 準則案이 下達되어 이번에 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參考로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는 88년도 5月 1日자 條例 6號에 規定이 뒀습니다.

이 條例 第4條에 別定職公務員 任用資格 基準에 대한 規定을 말씀드리면 第4條 第2項에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同法 第3項의 그 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다음과 같다고 하여 별도로 그 자격 기준을 열거 하였으며, 또한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任用資格 기준은 유사 職務分野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는 별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비상대비업무분야, 둘째가 전산분야,

세째가 부녀, 청소년, 아동, 복리분야, 네째가 사회복지분야, 다섯째 위험물취급분야, 여섯째가 행정관리분야로 되어 있어서 區議會 관련분야에 대한 規定이 없어 區議會 事務局 專門委員 충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改正案에 별표 1 임용자격기준 중에서 제6호 행정관리분야 다음에 제7항으로 區議會 관련분야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아마 여러분들 자리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제7항 區議會 분야 직명을 區議會 專門委員, 직급은 5급 상당, 직무 내용은 議案審議 및 議事進行 보좌, 다음 임용자격은 첫 번째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相關분야 경력인 3年 이상인 자, 두 번째가 6급 이상 公務員으로서 행정 경력인 10年 이상인 자, 세 번째가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相關분야 경력자, 이렇게 임용 자격을 제7항에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議員님들께서는 배부받으신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議員님들께서 정하여 주신 條例가 公布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專門委員을 임용하여 議會 運營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議員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區政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1991. 7.

提出者: 鍾路區廳長

1. 改正理由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構成에 따라 議會의 圓滑한 運營을 위하여 區議會 專門委員 任用을 위한 資格 基準을 定하기 위한 것임

2. 主要骨子

가.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專門委員(地方

別定職 5級 相當) 任用을 위한 資格
基準을 設定함(別表1)

3. 參考事項

- 가. 關係法令: 地方公務員法 제2조 제4항
地方自治法 第82條 第2項, 第3項
나. 其他: 新·舊 條文 對比表 別添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
管理條例 中 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6.행정관리분야 다음에 7.구의회관
련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 거
구 의 회 전 문 위 원	5급 상당	의안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 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 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 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舊 條文 對比表

現 行	改 正(案)				
<별표1>	7.구의회 관련분야				
<신 설>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 의 회 전문위원	5급 상당	의안심 의 및 의사진 행보좌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 력자	

○議長 李斗鶴 그러면 會議規則 第27條 規定에 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鄭鍾九議員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議員님께서 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九議員 鄭鍾九議員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 條例對比表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분야에 있어서 審議만 있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게 된, 이러한 임용자격이나 직무 내용을 신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예, 다른 議員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總務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周和鍾 鄭鍾九議員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第6項에 제가 행정관련분야라고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法規定上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6항에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6급 상당의 지도사, 7급 상당 그리고 지도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각 도에 공과금 조정 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과금 요원이 9급 상당, 이렇게 6항에는 공과금 요원하고 지도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區議會 관련분야는 별도 1, 2, 3, 4, 5항에 들어 있으면 되겠는데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급 상당의 專門委員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에 區議會 관련분야에서 7항으로 별포에 자격을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용자격은 세 가지가 있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두번째로 6급 이상, 6급이면 각 區의 동사무장하고 각 계장들이 6급입니다. 6급 이상의 公務員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세번째는 위 첫번째, 두번째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임용권자가 議會 議

長님하고 협의해서 임용할 적에는 이러한 임용자격을 갖춘 자라야만이 專門委員 5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의 1, 2, 3, 4, 5, 6 그 분야에 임용시가 되었으면 되겠는데 區議會 관련분야라는 것이 6항까지는 그것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항을 條例改定을 하면 새로 집어넣는 겁니다.

○議長 李斗鶴 더 이상 질의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芮相浩議員 말씀하세요.

○芮相浩議員 임용권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總務局長 周和鍾 임용권자는 區廳長입니다. 참고로 議員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區議會 事務局 직원들이 발령이 날 적에 반드시 議長님과 협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령을 냅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예. 玄壽漢議員 말씀하세요.

○玄壽漢議員 지금 7항에 삽입하는 것은 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사항 뒤에 집어넣게 되고 地方自治法 第82條에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地方公務員法에만……

○總務局長 周和鍾 아까 구포가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玄壽漢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條例改定에 대해서 다 보고드려서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議會 專門委員에 관한 문제니까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질문해 주시면 우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말씀이 길면 나와서 하시구요.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아니요. 우선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분야의 경우 3년 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선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가 지금 總務局長이 설명하신 대로 임용권자는 廳長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條例로 만들어 가지고 議會事務局 보조자를 임용하는 것인데 4년제 대학 졸업자, 3년 경력보다는 6급이라도 10년 이상 행정경력이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제님께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임명할 때 실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상의하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鄭鍾九議員 말씀하세요.

(○鄭鍾九議員 議席에서 — 추천은 어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임용권자는 區廳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鍾路區에서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천방법이 되겠죠)

○總務局長 周和鍾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議員님들도 추천할 수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議長 李斗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區廳長께서 임명을 합니다마는, 임명권자는 區廳長입니다마는 사전에 議會의 議長하고 상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으로부터 추천이 되든지 제가 추천을 하든지 區廳에서 추천하든지 가능한 우리 議會 전체의 문제니까 사전에 상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니까 이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말씀하시지요.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그것을 공채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議長님!)

그것보다도 실무적으로 나중에 실질적으로 타협을 하면 되겠습니다.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유인물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議長!」하는 이 있음)

예. 芮相浩議員 말씀하세요.

(○芮相浩議員 議席에서 — 인원은 몇

명을 채용하실 겁니까?)

○總務局長 周和鍾 2名입니다.

(○芮相浩議員 議席에서 — 내용은?)

2名으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이렇게 2名입니다. 지방 區議會 사무관이 일반직 과장급이 되는 것입니다.

○議長 李斗鶴 더이상 질의하실 議員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會議規則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李憲九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안녕하십니까? 李憲九議員입니다. 本 條例案은 아까 개회사에서 李斗鶴議長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議會가 開院된 지 오늘이 꼭 100일째 되는 날인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專門委員이 필요하던 차에 이번 이 條例案이 나와서 저 本人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가 區廳長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했었습니다마는 우리 區議會 또는 區政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을 임명하실 걸로 사료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區議會 專門委員으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이분들이라면 우리 區議會 발전과 區議員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돼서 동의를 표하면서 저의 동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그러면 李憲九議員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議員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會議規則 第36條 規定에 의해서 토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會議規則 第37條의 規定에 따라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表決방법은 규칙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起立表決로 할까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時54分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會議規則 第43條 規定에 의거 表決結果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 鍾路區 地方別定職公務員 人事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在籍議員 22名 中 出席議員 22名이 表決한 結果 贊成 22名으로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서울特別市鍾路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5時18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共用地에 編入된 私權制限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財務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오늘 上程된 공공용지 편입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綜合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條例 中에서 일부 改正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議長님과 우리 區의 議員 여러분을 모시고 鍾路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綜合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中에서 개정안을 本會議에서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綜合토지세 시행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綜合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 보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政策적인 자세로서 종래의 세목이었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폐지하고 대체 신설된 세목으로서 90년부터 施行된 국세입니다.

1988年 4月 28日날 제정이 되고 1989年 12月 31日 改正이 돼서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綜合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條例는 공공용지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장기간 事業施行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綜合토지세 산정시에 과세표준액을 50% 경감토록 불균일과세 일종의 일부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불균일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한 條例입니다. 1990年만 하더라도 저희 區에서는 299건에 7백4십3만4천원의 綜合토지세를 우리 區民에게 감면해준 바 있습니다.

오늘 上程된 改正條例案은 조문 일부 내용상에 다소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991年 6月 17日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개정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 鍾路區報에 일부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동 條例 第2條의 불균일과세 규정을 보면은 공공용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公用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을 해서 公用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都市計劃施設이 결정이 되고 都市計劃法 第13條 規定에 의해서 지적 고시된 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第2條 前단 規定에 公用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기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條 規定의 참뜻과 연결성이 없고 상호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條例 第2條의 문안 中에서 公用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과세 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앞으로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都市計劃施設로 장기간 묶여있는 토지를

소유한 다수의 우리 區民에게 수혜적 입법 장치로 볼 수 있는 금번 改正條例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議員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議員님들의 忌憚없는 지적과 꾸지람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를 거울삼아 열과 성을 다하여 區民을 위해서 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
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제출년월일 : 91. 7.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공공용지 개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고 했으나, 공공대상 여부 고시는 토지수용 단계에서 고시하게 되는 바, 순서가 맞지 않아 개념에 이를 삭제하여 과세면제 정당성 여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공용지 개념에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을 “시설용지를 말한다”

로 개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안 제2조]

나. 개정사항의 적용을 1991년도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하기로 함.[안 부칙 제2항]

3.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2항 제10호

<서울特別市鍾路區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
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附 則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제 2 조[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2 조[불균일과세]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議長 李斗鶴 財務局長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會議規則 第24條 규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議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質疑에 대해서는 여러 議員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한 분 한 분 議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羅在岩議員 羅在岩議員입니다. 지금 현재 鍾路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불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더 이상 질의하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玄孝善입니다.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창동에는 지금 한 1, 2만평의 사권제한토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용지로 묶여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감면이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더 이상 질의하실 議員 안 계시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지금 현재 課稅를 100으로 규정을 했는데… [聽取不能]… 土地에 課稅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0%를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운영에 얼마 정도의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 100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연간 課稅를 거둬 했는데 그것을 이제 50%로 다운을 시키면,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구 운영에 어려움은 없겠는가 묻고 싶습니다…[聽取不能]…)

또, 질의하실 議員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財務局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許萬攝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羅在岩議員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로 묶여 있는, 都市計劃施設로 묶여있는 필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都市計劃施設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都市計劃施設 자체가 5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준 사항이 299건에 7백4십만원 정도의 감면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條例를 改正한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5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문상의 하나의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都市計劃施設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수용이 될 단계에서 이러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年, 20년 지나서 이렇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쟁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條例改正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玄孝善議員이 말씀하신 평창동에 대해서는 공공용지가 아니라고 하면 동 條例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한 5, 6년전서부터 말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건축허가를 내려면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議長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년안에 서울에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玄議員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玄議員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成贊議員께서 만약에 이것이 감면이 된다고 하면 區財政에 어떠한 불편

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7백4십만원 정도 감면혜택으로는 그렇게 우리 區政 살림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지금 현재 100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결정은 토지 등급에 대한 과표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가표준액이 결정되면 토지 등급에 대한 과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과표에다가 토지면적을 승한 것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그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을 과세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기기에 5년 이상된 都市計劃 토지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50%를 도움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느 개인소유지에 재개발로 묶여 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말하면 상업지역인데 사실상 신축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도 6년 이상 7년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개인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을 때 종로구민한테 어떤 지탄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법 第7條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條例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로 묶여 5년, 7년이 된 지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區議會에서 條例로 만들면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區民이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선적으로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에 앞서서 우선 공공용지라는 것이 우리 區民 전체의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해서 우선 감면을 시켜주는 사항이고……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이하 聽取不能])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의 세목을 정하는 것은, 우리 區民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세목을 정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 과목입니다. 國會에서 세목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은 그 세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퇴장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더이상 質疑하실 議員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會議規則 第36條에 의거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會議規則 第36條의 規定에 의거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會議規則 第37條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共用地에 編入된 私權制限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方法은 規則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起立表決로 할까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贊成하시는 議員님들께서는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15時37分 起立表決)

앞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는 議員 제시면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共用地에 編入된 私權制限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 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 中 改正條例案은 在籍議員 22名 中 出席議員 22名の 全員 滿場一致의 贊成에 의해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오랜 時間 동안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會議規則 第14條의 規定에 의거 第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감사합니다.

(會議終了 15時40分)

○出席議員 22名

李 斗 鶴	李 憲 九	鄭 命 浩
千 相 旭	玄 壽 漢	玄 孝 善
沈 載 得	李 萬 魯	鄭 鍾 九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陳 琦 植	芮 相 浩
朴 禹 信	朴 勸 先	林 臥 龍
田 永 泰	金 憲 中	孫 光 一
金 成 贊		

○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庾 來 鳳
總 務 局 長	周 和 鍾
財 務 局 長	許 萬 攝

